



2021년부터 달라지는 사항

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

• 2021년부터 **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** 지원 금액을 **대폭 인상**하였습니다.



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및 금액 인상

- **초등학생**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206,000원에서 **286,000원으로 인상**됩니다.
- **중학생**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295,000원에서 **376,000원으로 인상**됩니다.
- **고등학생**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422,200원에서 **448,000원으로 인상**됩니다.

지급대상	지급항목	2020	2021
초등학생	교육활동지원비	206,000원	286,000원
중학생	교육활동지원비	295,000원	376,000원
고등학생	교육활동지원비	422,200원	448,000원

※ 고등학생 교과서대금, 입학금 및 수업료 별도 지원
※ 2020년 지원 금액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

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PC 또는 모바일) 신청 가능

-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**복지로(www.bokjiro.go.kr)**에서 **온라인(PC 또는 모바일)으로 언제,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** 할 수 있습니다.
- 아울러, **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** 가능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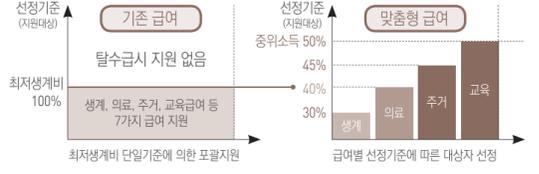
문의처

- ★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**129**
- ★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☎ **1544-9654**
- ★ 읍·면·동 주민센터, 학교 및 교육청

Q&A

Q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?

교육급여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 종류로서,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


생계, 의료, 주거 등 타 급여 대비하여 교육급여는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로 가장 완화되어 있으며,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.

Q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.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?
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,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를 최초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셔야 합니다. 이미 교육비를 받고 계시다면 학년도가 바뀌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하더라도,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**다만,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입학 이후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**

Q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?

'기초생활보장'을 통합신청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할 수 있으며,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
Q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?

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**온라인(PC 또는 모바일)으로 언제, 어디서나 신청** 가능합니다.



Q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. 교육급여를 받아도 법정 차상위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?

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,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차상위의 각종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**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** 부탁드립니다.

Q 작년엔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. 또 신청해야 하나요?

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'21년 교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,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**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** 보시기 바랍니다. (oneclick.moe.go.kr)
☞ 교육급여는 확인 필요없음

Q 왜 교육비만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?

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,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.

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이므로,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Q 형제 중 큰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,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.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?

큰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해도 되지만, **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** 합니다.

Q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?

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. 다만, 학부모님 외에도 **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,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** 신청할 수 있습니다

Q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주민센터 방문시에는 비치되어있는 **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**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**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,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** 제출하셔야 합니다.
☞ 국민기초생활수급자(교육급여 수급자)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온라인 신청시에는 **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**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.

Q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?

해당 시군구에서 **국세청,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** 학생의 부모, 형제,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.



Q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?

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**30일 이내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)**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서면(희망시 문자메세지)으로 통지 되고, 교육비는 **4월 말~ 5월 초 경 심사결과를 서면·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**드립니다.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
문의처

- ★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**129**
- ★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☎ **1544-9654**
- ★ 읍·면·동 주민센터, 학교 및 교육청



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

2021년도 초·중·고 학생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!!

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



집중 신청기간

2021년 3월 2일 (화) ~ 3월 19일 (금)

※ 연중 신청 가능하나,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

지원 대상

교육급여: 국민기초생활수급자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)
교육비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,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

지원 내용

교육급여: (초·중·고)교육활동지원비, (고)교과서대금, 입학금 및 수업료
교육비: 학교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 정보화지원(PC, 인터넷통신비), 고교 학비(입학금 및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등

신청 방법

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PC 또는 모바일) 신청
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•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moe.go.kr)
※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

제출 서류

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※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

교육급여와, 교육비 무엇이 다른가요?

지원기준

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,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·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 (통상 기준 중위소득 50%~70% 이하)

▶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,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소득인정액 산정 방식

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.

따라서 교육급여 선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%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,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는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'기준 중위소득'이란?

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



'소득인정액'이란?

가구원(학생본인, 부모, 형제, 자매 등)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

$$\text{소득 인정액} = \text{소득평가액}^{(1)} + \text{재산의 소득환산액}^{(2)}$$

(1) 가구의 근로, 사업, 재산,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

(2) (각종재산* - 기본공제액 - 부채) × 월 소득환산율

* 재산 : 토지, 주택, 전월세보증금, 예금, 주식, 보험, 자동차 등

지원기준

교육급여
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교육비

① 저소득층 자격 보유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「한부모 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- 법정 차상위 대상자

법정 차상위 종류

구분	내용
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	「국민건강 보험법」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
차상위 장애(아동) 수당 대상자	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라 장애(아동) 수당을 받는 자
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	「장애인 연금법」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
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	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

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"시도별 지원 기준"에 해당

③ 학교장 추천 :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

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

▶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 및 항목 상이

자격 구분	고교 학비	급식비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교육정보화 지원	
				PC	인터넷 (유해차단)
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	국민기초 생활수급자	○	○	○	○
	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	○	○		○
	법정차상위 대상자	○	○		○
소득인정액 기준	중위소득 68% 이하		중위소득 80% 이하		
학교장 추천	○		○		

▶ 지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의 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
신청절차 및 지원내용

교육급여 및 교육비 온라인 신청 절차

신청절차



지원 내용

교육급여

구분	교육활동지원비	교과서	입학금/수업료
초등학생	286,000원	-	-
중학생	376,000원	-	-
고등학생	448,000원	해당 학년 교과목 전체	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
지원 횟수	연 1회	연 1회	입학금: 신입생 수업료: 분기별
지원 방식	수급자 계좌로 지급	학교로 지급	감면 또는 지원

* 교과서, 입학금/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제학시

교육비

구분	고교 학비	급식비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교육정보화 지원	
				PC	인터넷 (유해차단)
초등학생	-	학기 중 중식비 전액 (무상급식 학교 제외)	연 60만원 내외 지원	가구별 컴퓨터 1대	가구별 1회선
중학생	-				
고등학생	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*				
지원 방식	학교 납부액 감면			직접 설치	요금 면제

* 교육급여로 입학금/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
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moe.go.kr) 접속

▶ 준비사항 : 공동인증서, 가구원의 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,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

